

##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임무와 문제점

진 홍 섭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1985년 4월 26일자로 문화재 위원회규정이 개정되어 종래의 제1분과가 3개 분과로 나뉘어 저서 제1분과는 「건조물」, 제1분과는 소위 동산문화재, 제3분과는 「사적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분과에서 관장하던 일을 어찌하여 3개의 분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유형의 문화재에 관한 심의사항이 하나의 분과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았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에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던 위원회가 이제는 한 달에 한번은 고사하고 두달에 한번도 열릴까 말까 하게 되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제2분과위원회에서 관장해야 할 사항은 「전적(典籍) · 서(書) · 고문서(古文書) · 회화(繪畫) · 조각(彫刻) · 공예(工藝)」 등으로서 유형문화재 중에서 건조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된다. 제2분과에서 관장할 이러한 것들과 제1분과가 관장하는 목조 석조의 건조물과는 구별되어야 할 차이점이 있고 제3분과가 관장하는 패총 · 고분 · 성지 · 요지 ·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는 더구나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서 제2분과가 관장하는 업무의 특징이 뚜렷이 부각되는 듯 하나 그 중에는 전적(典籍) · 서(書) · 고문서(古文書)와 회화(繪畫) · 조각(彫刻) · 공예(工藝)와 같이 서로 연관이 드문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2분과도 둘로 나눌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행의 3개 유형문화재분과의 관장업무에 관한 상호 관련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3개 분과의 위원들도 다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감은사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적지 안에 있는 3층석탑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또는 사찰 내 건조물에 벽화가 그려있을 경우, 또는 중요한 일괄유물과 그 출토 유적과의 관계 등 분과끼리 서로 연관이 있는 문제의 처리가 대두 될 듯하다. 나아가서는 석비(石碑)나 석등(石燈)을 건조물 또는 조각 · 공예의 어느 쪽에서 심의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일어날 것이고 이럴 때에는 분과 사이의 합동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과거의 제1분과를 다시 세분한 제도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량이 감소되어 편하기는 하나 한편 문화재 자체의 적절한 보존대책 수립 또는 1,2,3 각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분과에서 다루는 문제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 연관이 있으면서도 전혀 횡적 연락이 없는 등의 결함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지정이나 해제에 있어서는 분과 사이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터인데 그러한 신중성이 결여될 우려도 없지 않다.

다음에 제2분과의 심의사항에 관해서 눈을 돌려보면 심의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소위 동산문화로서 원상보존에 특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들이다. 이들 대부분이 종이 아니면 금속을 재료로 해서 제작된 것인 만큼 충해나 부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다.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일은 대상이 무엇이든 어려운 일이지만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문화재는 더욱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 틈에 썩어 먹고 습기가 차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들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처리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겠고 보수 기능자를 양성하여 이에 대한 과학인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 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120인 이내의 「사계의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일은 어느 분과의 전문위원도 한가지지만 제2분과는 심의대상이 가장 다양하고 그 대상이라는 것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그 전문위원은 지정을 위한 조사 이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사실 분과위원장이 「자료수집, 조사, 연구, 계획의 입안」 등을 위촉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의 활동이 심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는 있지만 행정관서인 만큼 전문학자들에 비하면 정보의 입수, 가치의 판정, 보존방향의 설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뒤지게 됨으로 문서에 의한 파악보다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진상을 파악하게 함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도 하나 문제되는 것은 석비(石碑) · 석등(石燈) · 당간지주(幢竿支柱) 또는 부도(浮屠)까지 포함시켜도 좋을지 모르나 석탑이나 기타 석조건물같이 덩치가 크지도 않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건조물 같은 가구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이러한 유물들을 제1분과 제2분과의 어느 쪽에서 심의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이미 제1분과에서 다루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2분과에서는 다른 일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분과 사이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난번 제2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어 국내에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아니한 유물은 국외에서의 전시에 출품할 수 없고, 국외전시를 할 때는 국외반출 이전에 국내전시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제1분과나 제3분과에도 해당되어 마땅한 사항이므로 보조를 같이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1분과 소관인 건조물에는 해당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목조건물에 부수된 벽화도 그 대상이 될 것이며 제3분과에서는 사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자주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보고되지 아니한 유물이 외국인 앞에 먼저 전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의는 여러 번 거론되어 왔으나 금번에 하나의 원칙으로 의결된 일은 적절한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일은 제 1,2,3 분과는 심의사항에 구분이 있기는 하나 상호 긴밀한 관련이 있는 유형문화재의 테두리 안에 드는 것인 까닭에 각자의 심의내용이나 결정 사항을 상호 교환 통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영주 순흥의 벽화고분도 마땅히 제3분과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지만 그 고분의 중요성이 고분 자체의 구조에만 있을 뿐 아니라 벽화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제2분과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표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거론된 바 전혀 없다. 제2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몇 위원이 제2분과위원 아닌 다른 자격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현장에 갔을 뿐이다. 이 문제도 주로 제3분과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제2분과나 제1분과에도 그 내용이 통고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하여 둘 일은 결과의 확인이다. 예를 들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 · 「현상변경」 ·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에 관한 심의 결정이 있는 후의 결과의 확인이다. 결과의 확인은 위원회 본연의 임무이기도 할 뿐 아니라 문화재 보전을 기하는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기도 하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3개 분과 중에서도 제2분과에 가장 많을 듯 하다. 적절한 지시도 중요하지만

그 지시가 지시한대로 이행 되었는지의 확인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제2분과위원회는 심의 내용이 타분과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어서 여러면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심의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며 그런대로 문화재보호에 그 지식을 빌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위원회 설치의 근본취지인 만치 사무당국도 위원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문화재 보호를 기해야 할 것이다.